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44 발의연월일: 2024. 12. 10.

발 의 자:이용우・박 정・모경종

이원택 • 진선미 • 민병덕

김한규 · 김교흥 · 박정현

박주민 • 백승아 • 백혜런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는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에 입장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가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저지하는 행태를 벌였음.

이는 경찰공무원이 국회 소속이 아니라 파견된 정부 소속이었기 때 문임.

이에 회의장 안에서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위와 건물 밖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구분을 없애고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국회경비 대를 신설하여 국회 내·외부의 경호와 국회의원의 신변보호, 회의장 질서유지 업무를 부여하고자 함(안 제144조, 제150조 및 제153조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4조제1항 중 "경위(警衛)"를 "국회경비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회경비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1. 국회 내 · 외부 경호
- 2. 국회의원의 신변보호. 이 경우 국회의원이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회 밖에서도 신 변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3. 회의장 질서 유지
- ③ 국회경비대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.
-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경비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제150조 본문 중 "경위나 경찰공무원은"을 "국회경비대는"으로 한다. 제153조제2항 중 "경위나 경찰공무원으로"를 "국회경비대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혂 제144조(경위와 경찰관) ① ----제144조(경위와 경찰관) ① 국회 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 국회 경비대----(警衛)를 둔다.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 ② 국회경비대는 다음 각 호의 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 직무를 수행한다. 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 1. 국회 내・외부 경호 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2. 국회의원의 신변보호. 이 경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. 우 국회의원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회 밖에서도 신변보호를 위한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3. 회의장 질서 유지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③ 국회경비대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, 경위는 회의장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. 건물 안에서, 경찰공무원은 회 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.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<신 설> 국회경비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 한다. 제150조(현행범인의 체포) 경위나 제150조(현행범인의 체포) 국회경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 비대는 -----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

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 다만,			
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			
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.			
제153조(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)	제153조(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)	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<u>경위</u>	② 국회경		
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	<u>비대로</u>		
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			
다.			